

## 스웨덴과 중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

이혜영\*

스웨덴과 중국은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체제이면서도 다문화 측면에서는 통합이라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통합의 성격을 보이는 유사한 맥락이나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이 통합정책의 주요 요소였다. 스웨덴은 이주민의 모국어와 스웨덴어를 그 자녀에게 학습시킴으로써 모국과 스웨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본인과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 또한 소수민족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하며 언어와 문자사용을 허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시켜주었다. 고용정책의 경우 스웨덴은 2008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이주민이 스웨덴 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고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에 소수민족의 채용과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은 최근 이주민의 노동권, 이주 여성의 인권, 이주 아동의 학습권과 정체성 등을 향상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의 주체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스웨덴, 중국, 이중언어교육, 고용정책, 이주민 통합**

## 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 1990년 이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단일민족이나 단일 문화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54,261명으로 전체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주민 수의 증가율만 본다면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볼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김명정, 2010). 그 이유는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적부여 원칙과 동화주의 시각(황정미 외, 2007)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통일된 왕조 아래에서 오래동안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했고 일제 강점기 때 민족주의 사상인 단일민족 이념이 형성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단일민족이나 민족 동질성에 대한 개념이 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면서 동화주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이용일, 2008). 그리고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성격은 공식적으로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과 협력’을 강조하는 통합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동화주의적인 시각에서 사회의 통합과 소수자를 위한 ‘시혜’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민무숙 외, 2009; 진대영, 강복정, 2011).<sup>1)</sup>

1) 여기서 동화정책이란 이주국에서 이주민의 문화를 배제하면서 이주국의 문화적 습득만 강조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며, 통합정책은 이런 동화정책과는 달리 이주민

실례로 탈북민 즉 새터민이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 국적을 부여하고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민족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한국 문화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한국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하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특정 직업군만 허용하고 체류 기간을 제한하고 불완전한 사회보장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한국 사회에 참여하는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는 한국 사람으로 일부는 이방인으로 남아있게 된다. 결국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현재 다른 이주집단에 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받는 결혼이주민과 새터민조차 늘 차별의 시선을 힘들어 하게 만든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외국인들의 반한감정도 높아지고 있다(엄한진 외, 2007).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학업 중단률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안나, 박경아, 2019).

이러한 현상으로 비추어볼 때, 한국의 현재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적부여 원칙 및 동화주의시각을 가진 다문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우며(황정미 외, 2007: 24), 이미 사회 내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다문화간 갈등은 후기 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다(임형백 외, 2009). 결국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김명정, 2010).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다문화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한승준, 2009).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이민자 복지 및 다문화통합정책과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스웨덴과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두 국가는 한국보다 빨리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였고 또 서로 다른 문화가 어느 정도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합적 모

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김이선 외, 2007).

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모로 스웨덴과 중국의 체제는 상이하다. 스웨덴은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자유, 평등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이며, 기독교 문화권이다.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를 정치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유교주의 문화권에 속해있다. 이렇게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이하면서도 이주민의 통합양상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비록 최근에 난민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웨덴이 국제사회에서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며(변광수, 2010) 우수한 통합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은 각종 소수민족정책을 통해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중국사회와 체제를 받아들이며 중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다민족사회를 건설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통합적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스웨덴과 중국의 상이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이주민의 양상이 유사한 그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 개념

일반적으로 다문화란 한 사회에 2개 이상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에 따른 ‘다문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sup>2)</sup>이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1957년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 대중화되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었으며, 이후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영어권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최영은, 2016).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과 교통 등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사회가 창출되었고, 한 국가 안에서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상호 존중·이해되며, 융화 발전하는 복합적 현상들이 나타났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형태를 ‘다문화사회’라고 한다(최영은, 2016).

다문화사회는 여러 인종이나 종교, 민족이 함께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Kymlicka(2005)는 복합인종 사회(polyethnic society)와 다민족 사회(multinational society)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대규모 이민에서 형성된 인종집단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기존의 문화적 실체들이 새로운 국가 속에 봉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사회를 말한다(장석인 외, 2013).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표방하는 이념체계이다(윤인진, 2007). 따라서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를 의미하며, 다문화주의는 지금 정착하고 있는 통합개념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의무로서, 그 국가는 한편으로 그 나라의 인구를 의미있게 구성하고 있는 민족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가능한 한 가치적인 원칙들을 기반으로 그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Savidan, 2012).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사회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다문화사회는 한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최웅선, 이용모, 주운현, 2012). 이질적인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기존의 문화와 갈등은 불가피하고, 이주 집단이 기존의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면 정치, 경제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사회적 비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금혜성 외, 2010).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소수자들의 사회적응, 특히 문화적응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 2.2 문화적응에 대한 논의: 베리(J. W. Berry, 1997)의 문화적응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적응에 관한 논의는 1930년대 북아메리카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전 지구적인 이주의 시대인 현 시점에서는 다국적인 학문적 주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베리(Berry, 1997)는 많은 논의들을 통해 문화적응을 개념화하고 구체화하였다. 고전적 의미로 문화적응이란 “문화가 서로 다른 집단들이 연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Redfield et al., 1936). 하지만 접촉하는 집단들이 똑같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뿐더러 다문화 사회에서는 민족의 수나, 정치적 세력 등에 따라 평등하지 않는 집단들이 형성된다. 베리는 이를 권력관계로 보면서 주류 집단(dominant group)과 비주류 집단(non-dominant group)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주류 집단은 선주민이나 원주민을, 비주류 집단은 이민자, 소수민족, 토착민 등을 의미하며 후자가 전자에 비해 더 많은 변화를 요구받는다(홍세영, 이해영, 2018).

베리(Berry, 1997)는 ‘고유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정도와 ‘이주국 주류사회와의 접촉 및 참여’ 정도에 따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유형화하였다. ‘고유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란 “어느 범위까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의미이며, ‘이주국의 접촉 정도는 “어느 범위까지 타문화 즉 주류사회의 새 문화에 관여하는가”이다(홍세영, 이해영, 2018). 여기서 분리란 모국의 문화만 유지하고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 주변화는 모국의 문화유지에 관심이 없는 동시에 주류사회의 참여에도 관심이 없는 형태를 가리킨다. 동화는 자신들의 고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지배적 주류문화에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은 자신의 고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lt;표 1&gt; 문화정체성의 양상

	고유 문화적 정체성	지배적 주류문화
통합	O	O
동화	X	O
분리	O	X
주변화	X	X

출처: Berry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일반적으로 이주국은 이주민의 동화나 통합을 추구하지만, 분리나 주변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이주민의 문화적응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집단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외에서의 문화적응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적 속성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이주국의 언어구사능력, 문화적응 동기, 주류 사회와의 상호교류, 성별, 연령, 교육, 직업, 소득, 거주기간, 사회적지지, 가족 결속력 등이 있다(권복순, 임보름, 2013; 김순규, 이주재, 2010; 노길희, 2012; 박철민, 2012; 이수범, 김동우, 2009; 이준호, 2014; 장덕희, 이정은, 2010; 전종우, 홍다현, 2017; 조창환, 성윤희, 2010; Chang, 1972; Kim, 1977; Kim, 1985; Kuo,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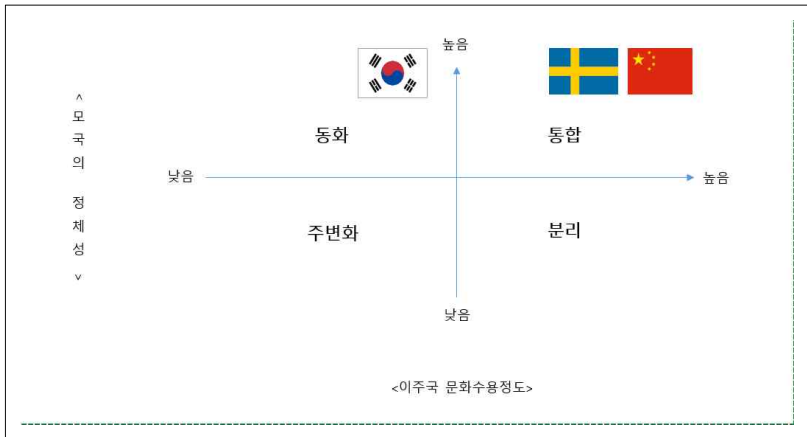
집단적 속성에 따른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정책, 즉 다문화정책이 중요한 요소이다(한발레리, 2011; 홍세영, 이혜영, 2018). 이민자들은 수용국에서의 언어문제, 편견과 차별, 경제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주류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양상은 국가의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정책은 통합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자 통합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이 되기도 한다(성연옥, 2013). 이와 같이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다문화 통합 정책도 최근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부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

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많은 연구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김명정, 2010; 홍세영, 2017). 포괄적 복지제도와 인도주의 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은 이민자에게 평등, 협동,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 개인의 권리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인종적 정체성과 문화전통을 인정해주면서 스웨덴의 새로운 제도와 문물에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갖가지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변광수, 2010).

반세기가 넘게 소수민족정책을 시행해온 중국은, 그 사이 20년 동안 급진적인 동화주의정책을 시행한 것<sup>3)</sup> 외에는 줄곧 온건적인 소수민족정책을 시행하여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중국 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하는 통합의 양상을 갖고 있다(전일욱, 2009; 조정남, 1988).

<그림 1> 한·중·스 3국의 문화적응 유형



3) 이 시기는 티벳 반공폭동(1959년)에서부터 문화대혁명(1966년~1978년)까지의 시기로 민족과 민족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통일정책을 실시하고, 민족차이를 부정하고 강압적인 민족동화를 추진하던 시기이다(문홍호, 1989).



### 3. 스웨덴과 중국의 이주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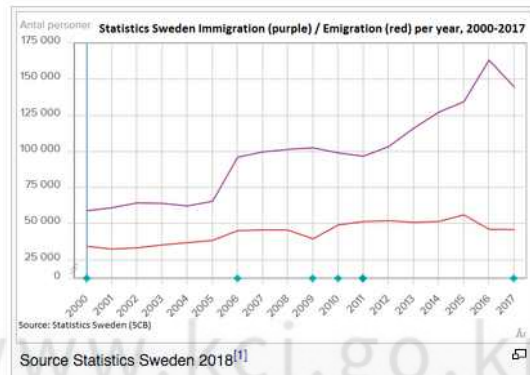
#### 3.1 스웨덴의 이주민현황과 다문화정책

##### 3.1.1 스웨덴의 이주민현황

###### 3.1.1.1 스웨덴의 이주민현황

2017년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스웨덴의 전체 인구는 9,960,487명이다. 이 중 2,43,007명이 이주민으로 스웨덴 전체인구의 약 24.1%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 즉 5명 중에 1명이 이주민이다. 이는 1950년대 초 외국계 주민 비율이 3%밖에 안되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구구조의 변화이고 한국이 4%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치이다(박현숙, 2018; 변광수, 2010).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스웨덴은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훨씬 많다. 그리고 <표 2>를 보면, 이 중에서 비중이 높은 그룹은 시리아, 핀란드, 이라크, 폴란드, 이란, 소말리아, 유고슬라비아 등 순으로 제 3세계 국가 이주민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2000~2017년 스웨덴 이민 통계



4)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스웨덴에서 출생하였으나 양쪽 부모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lt;표 2&gt; 외국인의 인구구성

출신국	수	출신국	수
시리아	172,258	소말리아	66,369
필란드	150,877	유고슬라비아	65,877
이라크	140,8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58,880
폴란드	91,180	독일	50,863
이란	74,096	터키	48,299

출처: Statistics Sweden (2018)

### 3.1.2 스웨덴 다문화정책 관련법

스웨덴의 근본 가치는 사회적 평등이다. 보편적 복지제도도 결국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스웨덴의 이주민 정책도 스웨덴의 근본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스웨덴의 다문화정책은 헌법에서부터 노동이민자법, 사회서비스법, 차별방지법 등 다방면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3.1.2.1 헌법

스웨덴 헌법(The Constitution of Sweden)은 국가의 관리방식을 규정한 법으로 의사결정, 집행권, 기초적 권리, 시민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홍세영, 2017). 스웨덴 헌법은 평등과 민주주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이주민도 스웨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스웨덴 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즉 이들은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주어지며 다양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권 등이 주어지고 스웨덴 사회에서 자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투표권 즉 참정권도 부여받는다. 즉 시민권의 권리가 이주민에게도 주어진다(강주현, 2011). 스웨덴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고 특별한 제한 없이 쉽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 해석에 있어서도 유연한 해석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한다(권경득, 박동수, 2018). 또한 이주민 관련 사항은 헌법에 옴부즈만 조항을 두어 인종차별문제를 감시·규제하고 외국인 차별철폐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

다(김철주, 2017).

### 3.1.2.2 사회서비스법

198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법은 스웨덴의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법으로 스웨덴의 난민, 이주민, 소수민족 등은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홍세영, 2017). 1994년 스웨덴 정부는 1994년 사회서비스법 조항에서 이주민에 대한 ‘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는 이주민에게 경제와 사회안정망을 제공하고 스웨덴인과 생활조건의 평등을 이루게 하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룰 수 있는 법적 조치이다. 스웨덴 지방정부는 이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일반적 규정, 활동,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혜, 발언권, 부분적승인, 항소권, 국가배상 침묵의 의미 및 전쟁의 주제 하에 전체 25조로 구성되어 있다(백석인, 2008).

### 3.1.2.3 노동이민법

스웨덴은 사실상 2008년 이전까지 노동이민은 불법이었으나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한 노동이력 부족은 노동이민을 허용하게 되었다. 2008년 이후 노동이민법을 통해 비유럽권 이주민들은 합법적인 노동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노조의 정치적인 반대도 있었지만 새로운 노동이민법의 시행으로 스웨덴은 현재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관대한 노동이민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홍세영, 2017). 개정된 노동이민법의 주요내용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스웨덴인처럼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최초의 취업허가는 2년이며, 그 이후 연장 할 수 있으며, 취업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손혜경, 2010).

### 3.1.2.4 차별방지법

스웨덴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1986년 처음 인종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최근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내용을 보강해

왔다(강주현, 2011). 2009년 이후 차별방지법을 통해 직장, 직업소개소, 사회보험, 주택, 교육, 사회서비스, 군대조직 등 모든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성,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표현, 인종적 배경, 종교, 장애, 성적 취향, 나이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차별을 금지 및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백석인, 2008; 홍세영, 2017).

<표 3> 스웨덴 다문화 정책 관련법

관련법	주요 내용
헌법	- 이민자는 법 앞에서 평등하고 소송과 재판의 법적 권리를 향유하며, 종교·표현·집회·결사의 기본 자유를 가진다. - 이주민 관련 옴부즈만 조항을 두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 서비스법	- 이주민과 난민들은 스웨덴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공공부조를 법제화한 이 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노동이민법	- 사용자로부터 받은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것을 허용한다. - 사용자가 스웨덴 노동시장 내의 평균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임금으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부양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취업을 허용한다.
차별방지법	- 성, 성적정체성이나 성적표현, 인종적 배경, 종교, 장애, 나이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 및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차별을 금지한다.

출처: 권경득, 박동수(2018). 표 재구성.

### 3.1.3 스웨덴 이주민정책의 기본원칙

1975년의 “이민과 소수민족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이민자 통합정책의 기본 방향은 평등, 선택자유, 협동의 3원칙으로 요약된다(변광수, 2010). 첫째, 평등은 스웨덴 사회의 핵심 가치이다. 스웨덴은 이주민들에게 스웨덴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장석인 외, 2013). 둘째, 선택 자유는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국 거주 외국인들이 모

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이민자가 언젠가 귀국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국과의 문화적 연대가 단절되지 않고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이다(변광수, 2010). 셋째, 협력의 원칙은 스웨덴인과 이주민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즉 서로 다름이 갈등이 아닌 상호존중과 상호 협력으로 나아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다(장석인 외, 2013).

### 3.1.4 스웨덴의 다문화제도

스웨덴의 주요 통합정책으로 언어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이 있다. 언어는 문화적응의 핵심 요소이다. 스웨덴에서 이주민을 위한 언어정책의 경우 이중언어를 선택하고 있다. 즉 스웨덴 교육과 모국어 교육을 둘 다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어는 이주민들이 직장, 사회적 삶 등 스웨덴 사회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의사소통 도구이다. 모국어 교육은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부모와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건강하게 스웨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이다(박현숙, 2017).

노동은 스웨덴 사회에서 하나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한다. 즉 의무는 기여이며 권리는 보장이다. 노동은 스웨덴 사회에서 개인이 자립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하고, 스웨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기반한 권리는 연금, 부모보험, 산재,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스웨덴 정부는 이주민의 통합정책의 핵심으로 고용정책을 꼽고 있다.

#### 3.1.4.1 이중언어교육정책

##### ① 이주민 스웨덴어 교육(SFI)

이주민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SFI)은 16세 이상의 스웨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이다. 스웨덴어 교육의 주요 목적은 이주민의

실용적인 언어습득으로 직장, 사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서 개인별로 시작과 종료가 다르다(박현숙, 2018).

1950년대~1960년대 취업이민의 급속적인 증가로 인해 이주노동자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의 언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1960년대이후 이주민에 대한 스웨덴어 교육(SFI)이 수행되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취업이민자는 일을 하기 전 먼저 스웨덴어를 배우게 되는데, 1973년부터는 총 240시간을, 1986부터는 400-500시간을, 현재는 700시간을 배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변광수, 2010).

교육내용은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인문 소양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업료와 교재가 무상일 뿐만 아니라, 교육기간이 휴직으로 인정되며 취업이민자와 난민은 소속 지자체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이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로써 스웨덴은 이주민이 입국해서 제일 먼저 직면하는 언어소통 문제와 문화적 소외감을 해결하여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변광수, 2010).

## ② 이민 2세의 모국어 교육

스웨덴에서는 이민 2세를 위한 모국어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스웨덴의 다문화 통합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이주민 자녀가 부모의 모국어와 스웨덴어를 동시에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모국어교육의 필요성은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다(박현숙, 2018; 변광수, 2010). 모국어 교육은 1975년 제정된 이민과 소수민족에 관한 법안에 따라 이주자들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스웨덴 국민의 일원으로 주류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동질성과 일체감을 갖게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통합정책 법안은 다문화 학생들의 모국어와 주류언어인 스웨덴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사고 도구로 발전하고 개발되도록 모국어 교육과 스웨덴어교육인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는데 기반이 되었다(박현숙, 2017).

현재 스웨덴에서 아동의 모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정체성확립, 학습 효과 향상, 국가적 자원, 가족 통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언어는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로 모국어 교육은 자기 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고 자아존중감이나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모국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습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모국어 습득능력은 다른 언어 구사 능력에도 도움을 주어 전체적으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 통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은 스웨덴어가 서툰 부모와 모국어로 의사소통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고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다양한 효과에 기반하여 1977년에 모국어교육을 의무화하였고, 다문화 학생들은 모국어를 공공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모국어학습과 모국어를 통한 타 과목의 학습지도라는 쌍방향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박현숙, 2018; 변광수, 2010). 현행 학교법(SFS, 2010: 800)에 따르면 모국어교육 대상 학생의 부모 혹은 양육권자 중 최소한 한 명의 모국어가 스웨덴어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 최소한 5명의 동일한 모국어교육 신청자와 해당 모국어교육 교사가 있어야 한다(박현숙, 2018).

현재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18년 모국어교육 대상 학생 수는 283,000명이 넘으며, 이 중의 59%가 모국어교육에 참가하였다. 또한 그 수 및 참가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웨덴의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모국어교육은 지난 40년 동안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박현숙, 2018).

#### 3.1.4.2 스웨덴 이주민의 고용정책

상기한 것처럼 스웨덴이 개방된 이민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노동력 부족 현상 때문이다.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자 난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노동이민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특히 고용

주들은 이주노동자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2008년 스웨덴은 이민정책을 개혁한다. 그 이전에는 스웨덴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개혁이 쉽지 않았다. 2008년 국제적으로 노동력을 채용하여 고용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는 비사회주의정당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민개혁의 특징은 고용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만큼 고용주들이 어디에 노동자들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노동 시장의 모든 부문에 개방되어 있다. 즉 공급중심의 노동정책이 수행되었다.

스웨덴 공공 고용 기관은 노동 이민 허가를 받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이주노동자가 취업한 곳의 고용주가 직접 평가한다. 잠재적인 이주 노동자가 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들과 스웨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같도록 했다. 이주 노동자는 임금, 보험, 기타 고용 조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12월 스웨덴은 노동이민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며, 모든 직종에 외국인의 고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망명자나 유학생도 스웨덴에서 취업이 용이해졌다. 이 개혁을 통해 스웨덴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개방된 국가로 변모하였다(홍세영, 2017).

2008년 이민 개혁의 일환으로, 망명 신청자들의 노동 이주민으로의 이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 조치는 망명을 허가받지 않았지만 취업을 할 수 있었고, 망명 절차 중에 일을 했던 전직 망명자들도 해당되었다. 그러한 전직 망명 신청자들은 노동 허가증을 신청하고 노동 이주자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지원자들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로, 그들은 신청하기 전에 4개월 동안 고용 경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그들은 신청 당시 적어도 1년 동안 유효한 계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2 중국의 다문화현황과 다문화정책

### 3.2.1 중국의 다문화현황

중국은 다른 다문화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의 발생 배경이나 특징에서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단일민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와 세계화 등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행되었다면, 중국은 이미 고대시대부터 여러 민족이 함께 공존하는 등 다민족 사회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다문화사회는 수천 년 동안 중원(中原)<sup>5)</sup>의 화하족<sup>6)</sup>과 수많은 소수민족이 전쟁, 이주, 통혼 등을 거치면서 중원을 중심으로 상호 동화를 통해서 형성됐다. 중국역사에 나타난 소수민족은 현재까지 140개가 넘지만 수천 년 동안 흥망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남아있는 민족은 55개 민족이다(강명상, 1988).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건국부터 다수민족인 한족(漢族)과 55개의 소수민족을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으면서 거대한 다민족국가로 시작했다. 즉 이주민으로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 대다수가 이미 거주해있는 소수민족 집단을 통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한족이 전체 인구의 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족 이외의 55개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이는 총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소수민족의 총 인구는 1억이 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

또한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측면에서는 소수민족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면적은 국토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천연자원,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인도, 몽골 등 주변의 14개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어, 국방과 외교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건국초기부터 소수민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회족과 만주족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53개 민족들 모두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내 소수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대략 80여종<sup>8)</sup>으로 매우 많지만 사용되고 있는 소

5) 사전적 의미로는 넓은 들밭의 가운데를 의미한다. 보통은 황하 중류, 중국의 중심지를 가리킨다.  
 6) 華夏族: 중국 한족(漢族)의 원류가 되는 민족이다.  
 7) 2010년 중국통계국 제6차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한족이 1,220,844,520명, 한족 이외의 55개 소수민족은 111,966,349명, 총 인구는 1,332,810,869명이다.

수민족 문자는 30여종 정도이다(孙宏开 외, 2007). 그리고 소수민족들은 의식주, 명절, 관혼상제 등 방면에 독특한 풍습을 지니며 소수민족 사이에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는 155개의 민족자치구역이 있는데, 그 중 5개의 자치구, 30개의 자치주, 120개의 자치현이 있다. 그 중,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내이멍구 자치구, 시장 자치구(티베트)는 중국 내 제일 큰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이 세 자치구만 해도 전국 면적의 40%를 차지한다.

### 3.2.2 중국 다문화관련법: 민족구역자치법

중국은 법치주의국가로서 법치국가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다민족 다문화국가로서 중국은 민족 갈등을 해결하고 소수민족을 통합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적 준거틀을 마련하였다. 바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이다.

#### 3.2.2.1 민족구역자치법의 역사적 배경

중국의 소수민족 통합정책은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나라가 신해혁명으로 멸망한 뒤 중화인민공화국인 현재 중국체제가 설립되기 전 과도기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이 때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치적 대립이 격렬하였다. 손문과 장개석이 이끌었던 국민당은 중화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성격의 정치체제를 내세웠으며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중국 사회주의를 내세웠다. 이들 간의 대립은 소수민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민당은 소수민족 정책으로 처음에는 쑨원의 5족 공화론<sup>9)</sup>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정부는 약소민족에 대하

- 
- 8) 어떤 민족은 거주지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소수민족 수에 비해 언어의 수가 더 많다.
- 9) 한족, 회족, 만주족, 티베트족, 몽골족의 5개 민족이 협력하는 공화국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언급한 5개의 민족은 단일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5개 민족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여 당연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이런 소수민족정책은 통합에 가까웠다. 그러나 쑨원 사후에 주도권을 장악한 장제스(蔣介石)는 쑨원의 5족공화론을 비롯한 민족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동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소수민족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면서 한족 중심의 통합을 지향하였다.

이에 반대로, 중국 공산당이 소수민족에게 내건 공약은 '민족자기결정권'이었다. 이 제안은 당시 소련의 소수민족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소수민족에게 그들 자체의 독립국가를 세우거나 중국연방국가의 한 자치구로 포섭될 것인지 선택권에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공봉진 외, 2009; 김태식, 2012).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공산당은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기존의 '민족자기결정권'으로부터 '민족자치'로 전향하였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공산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국민당과의 내전보다는 민족해방으로 전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38년 '제6기 전국대표대회 제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기존의 소수민족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고 통일 국가의 전제하에 민족구역자치제도의 건립을 주장하였다(박병구, 2007). 이로써 기존의 소수민족 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이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서의 강제적인 통합정책으로 후퇴되었다.

### 3.2.2.2 민족구역자치법 제정 및 시행

중국 공산당은 건국하기 전인 1947년에, 첫 번째 민족자치구인 '내이멍구 자치구(內蒙古自治區)'를 설치하였고, 195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 실시강요"를 발표하여 소수민족자치제도를 법률화,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수민족구역자치 형식의 민족정책은 문화대혁명기간 배척되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

1984년에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법'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1952년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 실시강요'를 기초로 한 것으로 총 7장 67조로 이루어졌으며, 민족정책목표가 민족 간의 평등·단결·상호협조에 있음을 내세웠다(최우길, 2005). 이 법은 2001년에 개정되었는데, 조항이 67조에서

10) 중국국민당 <https://zh.wikipedia.org/wiki/中國國民黨>

74조로 늘어났고, 민족자치지역의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보완해주었으며, 국가나 상급 국가기관의 원조를 명문화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찾아 볼 수 있다.

### 3.2.3 중국 소수민족 기본원칙

#### 3.2.3.1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기본원칙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원칙은 민족평등, 민족단결과 민족의 공동번영이며, 이는 중국이 민족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총화라고 볼 수 있다 (박광득, 2004).

1982년 개정된 <헌법> 제4조와 ‘소수민족구역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소수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의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손영기·이정향, 2013).

여기서 의미하는 민족 평등은 각 민족들이 모두 동등한 지위,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며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다. 민족단결은 각 민족 간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일욱, 2009). 민족의 공동번영은 각 민족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는 것이다(박광득, 2004).

<표 4>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주요 내용
민족 평등	민족들이 모두 동등한 지위,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의무를 이행, 모든 형식의 민족압박과 민족배제를 반대
민족 단결	각 민족 간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존중하고 서로 협력
민족의 공동번영	각 민족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진

#### 3.2.3.2 분리불가(分離不可)의 원칙

그러나 상기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민족정책의 기본원칙 외에도,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제1의 원칙이 있다. 바로 ‘분리불가의 원칙’이다. 헌법 제4조 3항에서는 각 민족자치구역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不可分離)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본 헌법 수정안에 등장하는 당 조항의 주요골자는, “중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은 통일 다민족국가이고, 어떠한 민족의 분열, 독립움직임도 용인치 않는다.”는 것이다(김태식, 2012). 이러한 분리불가의 원칙하에 소수민족정책의 3대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분리불가의 원칙은 중국 소수민족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원칙으로서 소수민족의 통합과 동화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게끔 하였다. 소수민족에 대해 각종 우대정책과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통합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소수민족 지역과 대만이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력도 감수하는 동화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 3.2.4 중국 다문화(소수민족) 정책의 주요내용

엄밀히 표현하면 중국은 다문화정책보다는 소수민족 정책이 더 정확하다. 인민공화국 건국초기부터 다수의 민족과 인종을 중국이라는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으면서 시작했다. 다수민족인 한족(漢族)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서 중국의 다문화정책은 소수민족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의 다문화 정책은 크게 사회문화, 경제, 교육 분야로 나누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3.2.4.1 사회문화정책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서 사회문화정책분야에 포함되는 것은 민족구역자치제도 실시, 간부 양성 및 채용, 소수민족 전통문화 포용정책 등이다.

##### ① 민족구역 자치제도 실시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중국정부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기본정책 중 하나로서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통일된 국가의 지도하에 각 소수민족이 집거지에서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과 민족특성에 근거하여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민족이 자치구역내에서 자치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중국의 국가통일성 또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송관덕, 1995).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이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구가 극히 적거나 분산되어 있는 10개 민족은 제외되었기에, 사실상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45개이다.<sup>11)</sup>

다음, 소수민족구역 자치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민족 자치구역의 자치기관은 주로 해당 지역의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고 기타 민족은 비례대표를 갖는다. 둘째, 자치기관은 해당 지역의 민족특성에 따라 자치구역의 법률,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 셋째, 자치기관은 해당 지역 소수민족 중에서 통용되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와 문자를 직권행사의 도구로 삼는다.<sup>12)</sup> 넷째, 자치기관은 민족의 특성과 풍속 및 습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자치기관은 해당 지역의 재정권을 행사할 때는 기타 동급 정부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향유한다(전일욱, 2009).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자치구역 행정 체계는 구-주-현-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자치구 5개, 자치주 30개, 자치현 120개, 자치향(군) 1,17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행정등급으로 구분하면 1급에 해당하는 행정구는 5개로서 네이멍구, 신장위구르, 시장(티벳), 닝샤 회족, 광시 좡족 등 5개 자치구이고, 2급 행정구로서 자치주가 있고, 3급 행정구는 향진에 해당한다.<sup>13)</sup> 중국 소수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앙이 부여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11) <當代中國的民族工作> 編輯委員會(1993). 當代中國的民族工作.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12) 예를 들면,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선어(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모든 간판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이 표기되어 있다.

있지만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권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박광득, 2004), 소수민족자치구역이 서로 횡적인 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치의 한계를 지닌다(조정남, 1988)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중국 소수민족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 중요한 제도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② 소수민족 간부 양성 및 채용

중국에서 ‘간부(幹部)’란 주로 국가기관과 군부대, 공공단체 등 공공조직의 관리자급을 의미한다. 중국은 소수민족 자치구 출신인 사람들을 간부로 채용하고 양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소수민족간부’는 경제, 과학,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조영래, 2008). 1950년의 1만여명으로부터 2014년에는 299만 4천명이 넘게 되었는데 이는 전국 간부의 7.6%를 차지한다.<sup>13)</sup>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건국과 동시에 소수민족구역을 비롯한 전국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소수민족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고 이 중 하나의 방편이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 및 채용이었다. <당대중국의 민족사업(当代中国的民族工作)>에 따르면, 초기 지도자인 마오쩌둥은 소수민족간부에 대하여 ‘모든 정부조직은 각 민족의 인구비례에 따라 소수민족을 선출시켜야 하며, 민족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다수의 소수민족 간부가 없으면 안된다’라며 민족간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1950년 11월에는 <소수민족 간부양성 시행안>이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정치학교와 훈련반을 개설하여 정치·전문직·기술직 간부를 양성하고, 또한 소수민족 간부학교 학생들에게 각종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전인영, 김소중, 금희연, 1996).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구역자치법> 제16조, 17조, 18조, 67조에 의하면, 소수민족 자치구의 공공 기관에서 채용이나 승진과 같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소수민족 간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

13) 国家民族事务委员会研究室(2007). 民族区域自治-中国特色社会主义的重要保证. 民族出版社. p. 8.

14) 民族网 <http://www.minzu56.net/zc/10140.html>

히 정부, 인민대표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등의 지도자도 비례에 따라 소수민족 간부를 배치하도록 한다(전일욱, 2009).

중국정부가 이토록 소수민족 간부 양성 및 채용에 노력하는 것은 민족간부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치구의 현 상황과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가 소수민족간부를 공식적으로 양성하는 이유는 민족간부들이 당과 정부, 소수민족과 중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이들을 양성하는 또한 민족구역에서 자치와 민족문제를 각 민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소수민족간부 양성 및 채용정책은 민족간부를 통해 해당 민족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며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한계도 있다. 전체적으로 소수민족 간부는 소수에 불과하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소수민족은 점점 더 줄어든다(전인영, 김소중, 금희연, 1996).

### ③ 소수민족 전통문화 포용정책: 소수민족의 풍속 및 습관 존중과 종교의 자유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기본원칙에 따라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포용하고 있다. 중국의 형법에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국민의 종교·신앙자유와 소수민족 풍속 및 습관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책은 국가가 무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소수민족자치사회의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풍속 및 관습은 각 민족의 역사전통, 경제생활, 문화예술, 심리와 감정 그리고 종교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민족문제의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게 요청되는 민족과 타민족을 구분하는 상징적 지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施正一, 1992).

따라서 소수민족은 음식, 혼인, 장례, 명절 등 자신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대중매체나 공공기관이 소수민족 전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각 민족 기념일의 휴가제도 시행,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하는 지역에서 소수민족에게 돼지 사육을 권장하지 말 것, 회족 등 이슬람권 문화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회교도가 경영하는 식당의 개설, 소수민족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상품의 전문 생산과 공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각 중 공공문건에서 규정하고 있다(전일옥, 2009).

종교 자유를 표방하는 중국은 헌법을 통해서도 이를 명문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정부가 무신론을 공산당의 이념으로 갖고 있는 한, 유신론인 소수민족의 신앙문제에서 일치를 이루기는 힘든 일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종교자유를 표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히 중국의 공직자들 가운데서는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이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 3.2.4.2 경제정책

중국 소수민족의 자치구역은 대부분이 국경지역과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한 상태에 처해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민족 간 이익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지역 및 민족 간의 갈등, 실업률 상승, 노동력 유출,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의 심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은 정치의 기초는 경제이므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족구역 자치제도도 결국 의미가 없게 되며 민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 1994) 그의 이러한 의지는 국책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국은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왔다(박광득, 2004). 소수민족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자치법”의 13개 조항을 통하여 소수민족자치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상급국가기관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소수민족지역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重点工程)를 위한 내용이 있도록 하였고,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외개방을 통해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소수민족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서부대개발전략, 소수민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소수민족 취약지역 지원정책, 3가지 중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sup>15)</sup>

서부대개발전략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국가 프로젝트였다. 서부는 소수민족의 주요 밀집거주지로서, 전체 소수민족인구의 71%를 차지하는 40여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하지만,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은 동부지역의 40%에 불과하여 경제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50년에 걸친 서부대개발 정책을 국가적 장기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2000년-2010년)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2단계(2011년-2030년)는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서부지역의 개발능력을 높이고 동부지역과의 경제격차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3단계(2031년-2050년)는 ‘소강사회’<sup>16)</sup>를 건설하고 공업과 정보 분야에서 현대화를 이루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서부대개발 정책은 고정자산투자와 지역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루어냈다. 2000~2008년, 서부지역의 고정자산투자 연평균 성장률은 23.4%에 달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9%, 동부 지역보다는 4.4%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0~2009년의 서부지역 총생산(GRP)은 평균 11.9% 성장하였다(新華網, 2010. 7. 6). 또한 후난성의 상시투자족자치주와 후베이성의 언스투자족자치주, 그리고 지린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비록 서부에 속하지는 않지만, 서부대개발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부대개발은 민족지역대개발이고, 민족지구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소수민족 부자만들기’프로젝트의 주요대상은 국경지역의 소수민족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국경의 21,00킬로미터의 육상경계선 주변의 135개의 자치현에 실행되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실제 투입된 자금이 150억위안으

15) 民族網 <http://www.minzu56.net/zc/5219.html>

16) ‘소강(小康)’은 <시경>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1979년 덩샤오핑이 ‘기본적인 의식주문제를 해결한 다음 부유한 생활을 이루기 전 단계’로 재해석하였다.

로, 2,10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전일욱, 2009).

소수민족 취약지역 지원정책은 22개의 인구수가 적은 소수민족의 지역발전권을 돕는 것이다. 인구가 10만 미만인 소수민족이 전국에 22개가 있는데, 약 60만명에 그친다. 역사적, 지리적 요인으로 이들 민족은 발전수준이 대체로 낮은 편으로, 국가에서 매년 5억 위안씩 발전기금을 통해 약 10년간 5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전일욱, 2009). 이외에도 각종 세금감면 정책<sup>17)</sup>과 금융정책에 대한 우대 정책<sup>18)</sup>을 실시하여 소수민족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소수민족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었다(박광득, 2004).

### 3.2.4.3 언어교육문화정책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의 언어는 5개의 語族, 10개의 語群, 70여 종류의 言語로 구분된다(施正一, 1992). 즉 중국의 소수민족은 회족과 만족들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그들 모두가 고유한 민족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인영, 1994).

언어와 문자는 민족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의 평등은 민족평등의 중요한 내용이자 징표이다.<sup>19)</sup> 그러므로 민족 어문정책은 한 국가의 민족정책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중언어교육은 중국의 소수민족교육정책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이중언어교육이란 민족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족언어와 중국어를 함께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학교에서 중국어만 배우는 것은 소수민족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소수민족에게 그들의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2년 “국가 언어문자 사업위원회의 현재 문자언어업무 지침 요청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규정’에 따라 소

17) 중국정부는 민족자치지역에 대한 일정액의 감면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빈곤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세를 감면하고 민족지역의 기업, 민족무역과 생산품에 대한 세금감면을 시행하였다.

18) 소수민족이 대출을 할 경우 이율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였다. 또한 민족자치지역이 자원개발을 할 경우 관리 및 개발권한을 부여하였다.

19) 民族网 <http://www.minzu56.net>

수민족 지역도 표준어의 대중화를 중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해당지역 민족 언어와 중국어 표준어 이중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김나래, 2016).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만 여개 민족 초·중·고등학교에서 600만명이 넘는 학생이 이중언어교육을 받고 있으며 21가지의 민족 문자, 60여가지의 민족언어가 사용되며 한해에 출판되는 소수민족어 교재는 가짓수만 3500여 개에 달하여, 총 출판 부수는 1억 권이 넘었다(방윙정, 2015). 중국 정부에서 소수민족들에게 학교 교육과정에서 본 민족의 언어 외 중국어를 배워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수민족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어의 습득을 통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소수민족 본 민족의 언어 및 문자를 배움으로써 각 소수민족의 문화전통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李延福, 拉本, 2002).

이 외에도 중국은 소수민족의 교육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자치법 제37조, 71조에 의하면, 소수민족 언어문자 교육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교사진을 육성하고, 이와 관련된 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고등학교와 중등 전문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수민족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각급 인민정부와 학교는 경비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여 도와 주어야 한다. 신입생을 모집할 때, 소수민족 수험생들에 대해 대학입학 조건을 완화해주거나 5~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여, 한족에 비해 생활수준과 경제 발전이 낙후한 소수민족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와 자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건국초기에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의 민족을 제외하고 많은 소수민족들은 문맹률이 매우 높았지만,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만족, 몽고족, 카자흐족 등 14개 소수민족의 교육과정은 전국평균수준을 상회했으며, 위구르족, 회족, 조선족, 나시족 등 열 몇 개의 소수민족은 만명당 차지하는 대학생점유율이 이미 전국 평균 수준을 초과하였다.<sup>20)</sup>

이러한 우대정책은 각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통해 소수민족의 균형화 발전과 민족 단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려군 외, 2016).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소수민족 지역 가산점이 불균형적인 분포나 신분 위조, 비리

20) 民族网 <http://www.minzu56.net/zc/10138.html>

등 교육에 대한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단진무, 2017).

<표 5>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내용

소수민족정책	내용
사회문화정책	- 민족구역 자치제도 실시 - 소수민족 간부 양성 및 채용 -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포용정책(풍속 및 신앙 존중)
경제정책	- 서부대개발정책 - 국경지역 ‘소수민족 부자만들기’ 전략 - 소수민족 취약지역 지원정책
교육문화정책	- 이중언어교육정책 - 소수민족 교육 우대정책

#### 4. 결론

본 연구는 스웨덴과 중국의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였다. 두 국가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체제이면서도 다문화 성격에서는 통합이라는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과 중국의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면서 통합적 성격을 보이는 공통적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과 중국은 사회체제부터 다르다. 스웨덴은 자본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고,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기존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 이로 인해 중국을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은 국가의 개입이 강하기에 부분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스웨덴과 중국의 다문화국가의 기원을 비교해보면, 양국의 그 기원은 완전히 다르다. 스웨덴은 원래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였지만, 세계화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이민으로 인하여 다문화국가로 진입한 경우이다. 반면, 중국은 수천년간 한족과 소수민족들이 어우러져 살면서,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될 때, 56개의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면서 다민족사회, 즉 다문화사회로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다른 다문화사회와 달리, 내부로부터의 흡수로 인하여 다문화사회를 이룬 것이다.

셋째, 스웨덴과 중국의 다문화관련법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헌법과 사회서비스법, 노동이민법, 차별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소수민족자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헌법으로 이주민의 시민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사회서비스법으로는 그들에게 경제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주며, 노동이민법으로 이주민이 스웨덴으로 합법적인 진출을 보장해주었으며, 차별방지법으로 이주민들의 각종 차별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제공해주었다. 중국은 소수민족구역자치법을 통해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웨덴과 중국의 다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평등, 선택의 자유, 협력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평등, 단결, 공동번영의 원칙을 갖고 있다. 양국의 다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보면, 큰 의미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중국은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제1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리불가의 원칙이다. 따라서 중국의 소수민족문제는 독립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민족자치와 정체성을 인정해주며 각종 우대정책과 통합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한계적인 통합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중국 건국 시 내부로부터 흡수한 다민족사회이라는 한계 때문인 것 같다. 외부로부터의 이민으로 인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주민들이 자신의 차별과 불만을 표출하는 소요사태 등 현상은 나타나지만, 독립하려는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양국의 다문화국가의 기원에서부터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스웨덴과 중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의 통합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정책 등이 있고, 중국은 크게 사회문화정책과 경제정책, 교육문화정책이 있다. 사회문화정책에는 민족구역자치제도 실시, 간부 양성 및 채용, 소수민족 전통문화 포용정책이 있고, 경제정책에는 서부대개발전략, 소수민족 부자만들기 프로젝트, 소수민족 취약지역 지원정책이 있으며, 교육문화정책에는 소수민족 교육우대정책과

이중언어교육정책이 있다.

결론적으로 양국의 통합을 이루는 주요 요소는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이었다. 스웨덴은 이주민의 모국어와 스웨덴어를 그 자녀에게 학습시킴으로써 모국과 스웨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본인과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중국도 소수민족자치제도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하며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사용을 허용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문화를 유지시켜주었다. 고용정책의 경우 스웨덴은 2008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이주민이 스웨덴 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고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에 소수민족의 채용과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전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기에, 통합정책으로서 스웨덴과 중국을 비교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는 다문화 고용정책과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문화 국가인 스웨덴과 중국의 통합정책의 맥락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물론 중국과 스웨덴이 한국의 다문화 정책 대상과 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정책을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중국의 통합을 이뤄낸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다문화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이 전무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시행한 이주민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은 이주민의 노동권, 이주 여성의 인권, 이주 아동의 학습권과 정체성 등을 향상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의 주체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간헐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 특성에 맞는 다문화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을 제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경득, 박동수(2018, 6). 스웨덴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 고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1339-1364.
- 권복순, 임보름(2013). 특집 2: 결혼이주민들의 생활세계; 대구,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의 영향요인 연구. 민족연구, 53, 130-152.
- 금혜성, 임지혜(2018). 독일영국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비교: 외국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3(2), 33-70.
- 김나래(2016).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한중미래연구, 7, 111-147.
- 김명정(2010). 다문화 사회를 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 이주재(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철주(2017). 스웨덴 거주 이주민 밀집지역의 게토화 실태와 원인: 말피시 사례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연구, 20, 43-82.
- 김태식(2012). 다민족 통일국가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연구-저항과 동화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30, 269-292.
- 노길희(2012). 뉴욕시 거주 한인 노인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159-189.
- 단진무(2017). 중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관한 연구: 소수민족 교육우대정책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려군, 한 대동, 오경희(2016). 중국 소수민족의 대학입학 우대정책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4(2), 175-196.
- 문홍호(1989).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北韓, 208, 95-104.
- 민무숙, 김이숙, 이춘아, 이소영(2009).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



- 제. 한국여성정책개발원.
- 박광득(2004).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연구. 대한정학회보, 12(1), 269-291.
- 박철민(2012).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413-436.
- 박현숙(2018). 스웨덴의 모국어교육. 스칸디나비아연구, 22, 117-148.
- 박형원(2010).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308-316.
- 방월정(2015). 한국과 중국의 다문화교육과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석인(2008). 스웨덴의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및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스칸디나비아 연구, 9, 35-68.
- 변광수(2010).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이민2세의 모국어교육 제도. 언어와 문화, 6(2), 1-22.
- 성연옥(2013). 미국,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교 연구. 기업경영리뷰, 4(2), 23-44.
- 손혜경(2010). 스웨덴의 새로운 이주 노동자 정책. 국제노동브리핑, 8(9), 75-85.
- 송관덕(1995). 당대중국조선족연구-연변의 민족간부양성사업에 대한 역사적 회고. 서울:집문당.
- 이수범, 김동우(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11, 47-79.
- 이안나, 박경아(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9.
- 이용일(2008). 중심을 향한 독일의 근대적 열정과 그 통합이념체계들. 역사학보, 200, 547-577.
- 이준호(2014). 미국 중부 지역 한국 교민의 문화적응 요인과 방송 이용 특성. 미국학논집, 46(2), 93-129.

- 장덕희, 이경은(2010).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공식적 지지가 정신건강과 문화 적응에 가지는 효과. *젠더와 문화*, 3(1), 67-97.
- 장석인, 김광수, 레 팡 까잉, 레 도안 화이(2013). 서유럽 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을 중심으로. *기업경영리뷰*, 4(2), 69-88.
- 전인영(1994).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어문·풍습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3(3), 73-98.
- 전인영, 김소중, 금희연(1996).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간부충원과 경제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20(3), 35-71.
- 전일옥(2009).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SWOT분석. *평화학연구*, 10(4), 191-214.
- 전종우, 홍다현(2017). 미국 거주 한국인들의 미국문화적응과 자문화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디어 이용과 직접경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6(4), 287-308.
- 조영래(2008). 중국 소수민족정책과 민족간부 양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4, 169-210.
- 조정남(1988). 중국의 민족문제. 교양사.
- 조창환, 성윤희(20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54(4), 374-397.
- 최영은(2016). 다문화사회의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정책. 북코리아.
- 최우길(2005).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진화.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2005(5), 243-267.
- 최웅선, 이용모, 주운현(2012).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1), 33-70.
- 한발레리(2011).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적응 및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공. *디아스포라연구*, 5(2), 153-171.
- 한승준(2009).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269-291.

- 홍세영(2017). 스칸디나비아 다문화 법적 체계 및 통합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법연구*, 33, 141-188.
- 홍세영, 이해영(2018). 조선족 1세대의 문화적응 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융합인문학*, 6(1), 79-130.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Kim, H. (1985). Acculturation Motiva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s: A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Los Angeles Area. *한국언론학보*, 20, 155-179.
- Ragin, C. C. (2002). *비교방법론*(이재은, 신현중, 윤경준, 이우권 공역). 서울: 대영출판사.
- Savidan, P. (2012). 다문화주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갈등과 인정의 방식(이산호, 김휘택 공역). 광명: 경진.
- 当代中国丛书编辑委员会(1993). 当代中国的民族工作.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 李延福, 拉本(2002). 文化的多元性与少数民族双语教学. *青海民族研究*, 13(3), 94-97.
- 民族网 <http://www.minzu56.net/zc/10140.html>
- 施正一(1992). *广义民族学*. 北京: 光明日报出版社.
- 新华网 <http://politics.people.com.cn/BIG5/1026/12066494.html>
-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1994). *邓小平文选*. 北京: 人民出版社.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Chang, W. H. (1972). Communication and acculturation: a case of Korean ethnic group in Los Angel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tiy of Iowa.
- Kim, Y. Y. (1977). Communication pattern of foreign immigrants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66-77.
- Kuo, W. (1982). Perceptions of assimilation among the Chinese in the United

- States. *Research in Race and Ethnic Relations*, 3, 127-143.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Liberal multiculturalism: Western models, global trends, and Asian debates. In W. Kymlicka, & B. He (Eds.), *Multiculturalism in Asia*. (pp. 22-55).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2).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Schaeffer, P. V., & Bukenya, J. O. (2010). Assimilation of foreigners in former West Germany. *International Migration*, 52(4), 157-174. doi:10.1111/j.1468-2435.2010.00617.x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Sweden and China**

Lee, Hy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weden with China in Multicultural policies. While China and Sweden have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multicultural nature is similar. The both of them have Integration. So My resarch qestion is what do Swedish and Chinese integration policies have in common?. In conclusion, employment policy and bilingual Education System were the main factors in the integration policy. Supporting minority and their family member to the Mother tongue and immigrant language, it is possible to keep their cultural identity and help their child build with positive identities. Employment is Lour right. It encourages immigrants or Minor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mainstream society. Therefore,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In Korea, the nature of immigrant policy is assimilation so immigrant has many restrictions on actively participating in Korean society while keep their own culture. Mother tongue is important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y and keep positive self-concept. In Korea, immigrant especially children who can't not speak mother tongue, have experienced a serious language problem and some of them lost communication their mother. So it impact on family relationship negatively. In Korea, Immigrant employment policy is not protected their labour right.

www.kci.go.kr

---

\* Ph.D. Candidate in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Key Words: China, Sweden, bilingual Education System, employment policy, integration**

---

성명: 이해영(Lee, Hye-Young)  
소속: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rouyan1981@gmail.com

논문 접수일: 2019.11.30.  
수정원고 접수일: 2019.12.23.

논문심사 완료일: 2019.12.21.  
게재 확정일: 2019.12.28.